# 04 재외동포(F4) 비자

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(동포포함)은 사전에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 그러나 90일 이하 동안의 관광, 통과 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.

#### 가, 재외동포체류자격

- 1) '재외동포체류자격'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(F-4 비자)으로,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합니다.
- 2) '재외동포체류자격'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,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, 단순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주는 사증입니다.
- 3) 재외동포(F4) 비자신청 대상
  - 가) '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'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 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
  - 나)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  - 다)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
### 구비서류

- 비자신청서 (Visa Application Form) 1매
- 유효한 여권
-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(2인치 x 2인치)
- 비자 수수료: \$45.00 (현금 또는 money order only)

#### 신청대상별 추가 제출서류

-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  - ①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(부모님의 성명이 표기되어야 함)
  - ②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  - ③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(외국국적 여권) 서류(원본 대조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
  - ①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서류 (원본 대조)
  - ② 신청자의 국적 상실일이 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- 4)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사항
  - 가) 개정 국적법 공포(2010.5.4)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    - 대한민국 출ㆍ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
    -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
  - 나) 개정국적법 공포(2010.5.4)전에 만 22세가 경과한 사람은 재외동포사 증이 발급이 가능하나, 신청 전에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-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출생신고를 하여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 확인후 가족관계등록부 정 리 절차 필요
    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고 외국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무호적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만 41세가 되는 1월1일에 병역의무가 해소됨(병역법 제72조)
- 5) 새 국적법 (2011년 1월 1일 시행) 등에 따라 재외동포가 한국사증 신청시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안내
  - 가) 한국 출생 후 미국 시민권 취득자 : 본인 국적상실 신고 후 사증 신청

나) 한국계 미국 출생자 : 부모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부모의 한국국적상실신고 후 사증 발급가능

## 나. 국내 거소신고(거소증) 안내

- 1) 재외동포(F-4) 비자로 국내 입국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 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2) 국내 거소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공관에서는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신 고를 해야 합니다.
- 3)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4)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5) 국내 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# 구비서류

-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(인적사항 사진면)
- 사진 1매(3.5cm×4.5cm) 수수료: 20,000원(정부수입인지)
- 거소신고(신청)서
- 시민권증서 사본
-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(2008.1.1 이후 폐쇄된 경우)
-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(2008 11 이전 제적된 경우)
- 국적상실신고 수리이전 국적상실신고접수증(재외공관 발급)과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# 다. 재외동포(F4) 비자관련 **Q** & **A**

- Q 저는 미국에서 출생한 92년 남자입니다. 출생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신후 미국 시민권자이셨습니다.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?
-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자에 해당되므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준비하실 서류는 부모의 국적상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및 시민권증서사본,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, 여권, 사진1장, 수수료 \$45입니다.
- Q 저는 얼마전에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복수국적 신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.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, 유럽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?
- A 복수국적이 되신 후에는 미국 입출국 시에는 미국여권을,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나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 여행시에는 자유롭게 어느 여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
- Q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. 아직 국적상 실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긴급하게 방문해야 하는데 비자없이 입국 후 국내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?
- A 국내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상실과 함께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 준비하실 서류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미국여권, 사진1장, 수수료,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, 국적상실신고서 및 거소증 신청서입니다.
- Q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을 약 1주일간 관광할 예정입니다. 이러한 경우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?
- A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사전에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영 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 그러나 90일미만 동안 방문, 관광,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

입국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유효한 미국여권을 소지한 후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. 단, 90일미만 체류한다는 비행기표 를 제시하셔야 합니다.

- Q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기업 지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출생한 작은아이 한국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. 이번에 한국본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작은아이의 경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둘 다 발급받았는데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하는지요?
- A 한국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둘째 아이의 경우 한국입국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의 행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셨기에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면 당연히한국비자, 외국인등록,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한국 출국시에는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하고미국 입국시에는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됩니다.